

- 2025 변호사 연수 -

지역 공익변론 10년의 성과와 조망

일시 : 2025. 3. 21. (금) 17-19시

장소 : 광주지방변호사회 6층



〈 프 로 그 램 〉

(좌장 : 대한변협 프로보노센터장 최정규 변호사)		
10'	인사말	김용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 하재욱(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정규(대한변협프로보노센터장)
20'	1발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변론 주제별 10년 성과	이소아 변호사
20'	2발제 : 지역 인권옹호 활동과 지역 공익변호사의 협업	남궁미 활동가 (하랑-청소년 성착취 피해지원 센터)
10분 휴식		
10'	토론 : 지역 법조와 동행의 협업	김성진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10'	토론 : 지역 공변과 리걸클리닉	김인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10'	토론 : 부산 사례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20'	질의 응답	

제 1 발제

동행의 경험으로 본 지역 공익소송의 실제

- 비영리 전업 활동 중심으로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I. 들어가며

제목이 지역 ‘공익’ 소송의 실제이나,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인데다가,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방식도 다양하기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다. 동행의 활동만이 공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행의 활동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역 최초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를 만들어 지내온 지난 10년을 경험을 지역 동료 변호사들에게 꺼내 보이고 싶었다.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동행의 지난 10년의 성과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전 동행을 설립할 당시 ‘공익변호사’가 무엇이나, 다른 변호사들이랑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굳이 비영리 전업으로 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동행의 이름에 왜 ‘인권’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도 수입료는 조금씩 받고 하는 것 아니냐, 부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 동행은 무슨 사건을 하느냐는 질문들도 받았다. 의심도 많이 받았다. 결국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저러다 금방 그만두겠지, 서울로 떠나겠지라는 의심.

이름과 관련하여 먼저 해명하자면, 사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하 ‘동행’이라 한다)을 기획하고 설립할 당시는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同行’으로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일반적인 범무법인과 차별점이 없어 대중들이 후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의견들이 많아 이름에 꼭 ‘공익변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창립 총회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인권의 벽을 허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 단어를 쓸 용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일반 시민들은 ‘인권변호사’라는 이름에서 지사적이고 저돌적이며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조영래, 한승헌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을 떠올리실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나머지 질문들(비영리인 이유와 변론 현황)에 대하여 차근차근히 답을 해나가면서 동행이 경험한 공익소송 실무(시외버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농어업 계절이주노동 관련 법제개선)에 대하여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을 간략히 전하겠다.

II. 설립 배경 및 운영현황(변론 포함)

1. 비영리 전업 이유

동행이 비영리 전업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법률서비스의 구매력이 없고 법률 쟁송을 이어갈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행정소송, 장애인권), 당사자 스스로가 법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예. 아동, 이주노동자), 공익적인 의미는 있으나 사건 자체로부터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는 등으로(예. 협동조합 관련 소송) 그 목소리가 법적으로 들리지 않거나 지워진 경우. 바로 그 곳에 바로 인권의 보편성을 가로막는 벽이 세워지기 때문에 비영리 방식을 사업모델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벽을 부수기 위한 소송/법제 개선 운동 등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끈질김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비영리모델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

해서도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이소아 개인은 결코 헌신적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기에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나면 운영위원들과 정기총회의 회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2015. 5. 14. 동행을 설립했다.

2. 운영 현황

가. 수익인 듯 수익 아닌 수익모델

	인권옹호지원측면	연대/확장측면
고객	당사자/인권활동가	일반시민/후원자
제공 서비스	전문법률지식	공익인권육구 대리만족
수익/세무/ <u>별개</u> <u>독립조직</u>	<p>법률사무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분리(변호사법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료는 받지 않음 - 소송구조 수입: <u>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u>, 교통비 식비등 복리후생, 운영비 총당 <p>-사업자등록증</p>	<p>비법인사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 : <u>급여는 오로지 후원금에서만</u> - 고유번호증 - 공익법인 회계기준 - 공익법인 신고 의무

나. 다루는 주제

○ 장애 : 동료시민인 장애인이 민주주의의 장애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벽을 허물기 위한 활동(예.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노동력 착취 사건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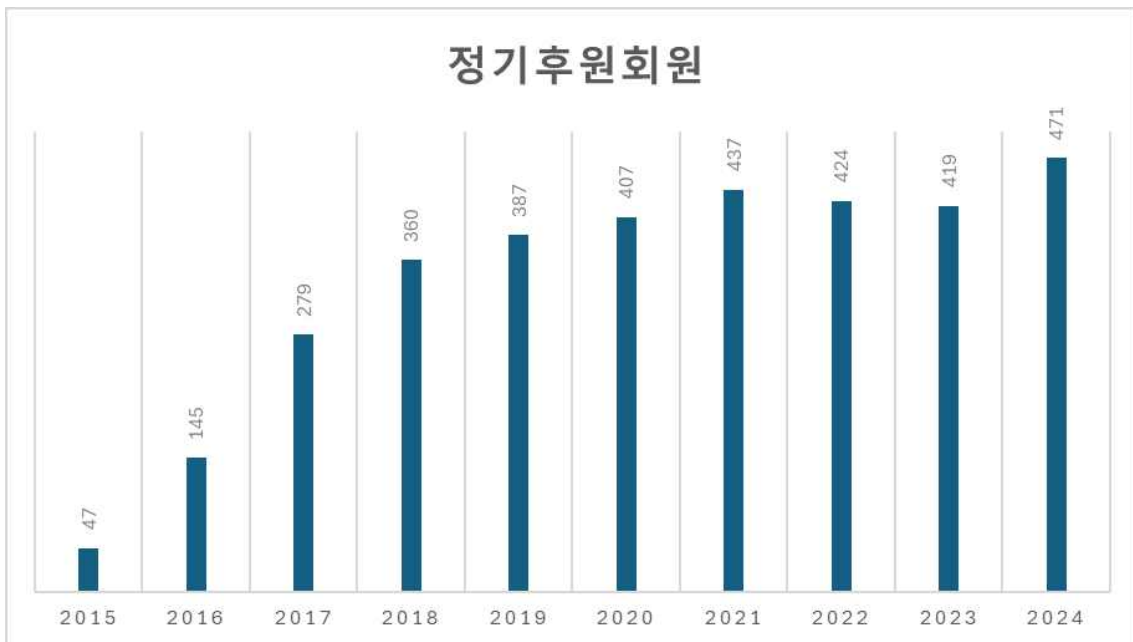
○ 인신매매/성매매 : 나이, 국적, 성별, 장애를 불문하고 모든 인신매매와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예.인신매매피해자지원법 제도 개선, 피해자 민형사 지원 등)

○ 농어업계절이주노동과 농어민 :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모든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농어민의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지원

-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 성소수자 : 성별정정허가신청 등
- 비정규직 노동 : 지역 방송국 프리랜서 AD/기자, 지역 산불예방진화대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 기타 공익법일반 : 생협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정기후원 변화 및 재정 현황

1) 정기후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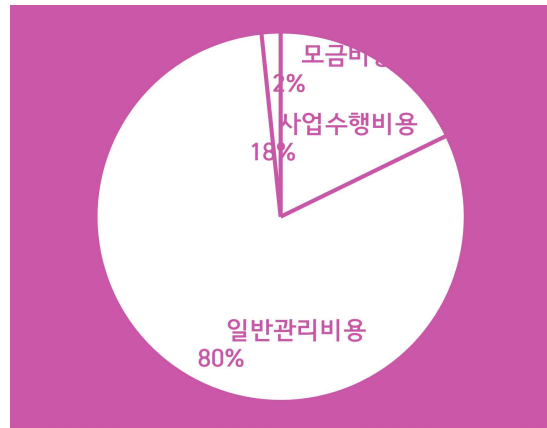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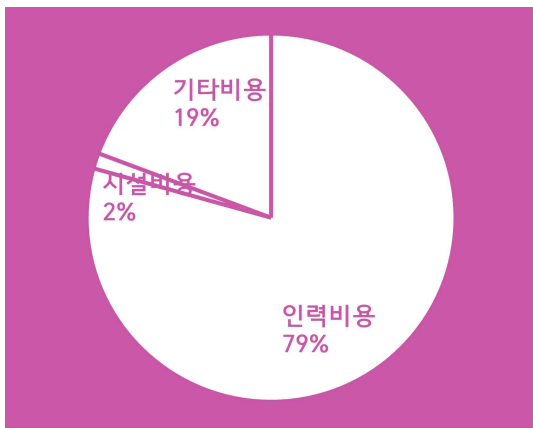
10년이 되었으나 아직 정기후원자 수가 5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 연차가 5년이 넘어가는 2020년부터 둔해지다가 2022년과 2023년 연속 회원 수가 줄어들었다. 2022년과 2023년에 회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불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시 상근자들이 대거 퇴사하여 후원과 홍보에 아무런 힘을 쏟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도 크다. 바꾸어 말하면 2020년부터는 후원과 홍보에 신경을 쓰더라도 회원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2024년도부터 현재의 상근자 수가 되면서 뉴스레터 홍보, 회원사업 등을 다시 정비하여 정착하면서 회원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

히 전체 상근자의 안정적인 급여를 위해서는 많이 모자란다.

정기후원금은 월 850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전남에 지부를 내고자 하는 계획, 지역사회에서의 파급력, 상근변호사 2명, 반상근 활동가 2명의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회원수가 1천명에는 이르러야 안정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에 앞으로 헤쳐가야 할 길이 멀다.

2) 재정 현황(2023 기준)

과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113,204,130	1,950,000	27,561,681	142,715,811
사업수행비용	3,000,000	0	22,369,100	25,369,100
일반관리비용	110,204,130	1,950,000	2,825,411	114,979,541
모금비용	0	0	2,367,170	2,367,170



과목	2023
	공익목적사업
I.사업수익	105,551,060
A.사업수익	105,551,060
1.기부금수익	105,551,060
일반기부금	101,542,710
특정목적기부금	4,008,350

Ⅱ.사업비용	142,715,811
A.공익목적사업비용	142,715,811
1.사업수행비용	25,369,100
인력비용	3,000,000
기타비용	22,369,100
2.일반관리비용	114,979,541
인력비용	110,204,130
시설비용	1,950,000
기타비용	2,825,411
3.모금비용	2,367,170
기타비용	2,367,170
Ⅲ.사업이익(손실)	-37,164,751
Ⅳ.사업외수익	2,530,852
Ⅴ.사업외비용	0
Ⅶ.당기운영이익(손실)	-34,633,899

3. 변론 및 연구

가. 사전지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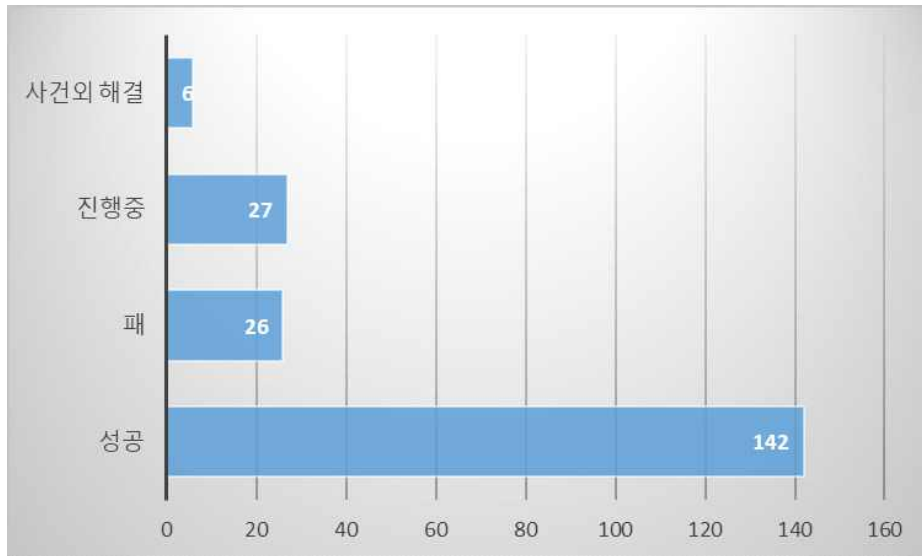
당사자로부터 수입료를 받지 않고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무국의 회의를 거쳐(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칠 수도 있음) 동행의 변론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동행의 상근변호사들은 수입료를 받는 사전 사건은 맡지 않고 부업으로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상담도 진행하지 않는다.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서 ①동행이 해야 하는지, ②동행만이 할 수 있는지, ③동행이 끝까지 할 수 있는지, ④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한 파급력이나 의미를 갖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나. 변론 현황

1) 총 사건 수와 승소율

인권옹호 변론단체에서 소송수, 당사자수, 승패율은 변화나 성과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이나 회원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록의 의미도 있기에 정리해보았다.



○ 지난 10년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을 합하여 약 198건의 사건(당사자수 아님)을 지원하였고, 승소율은 72%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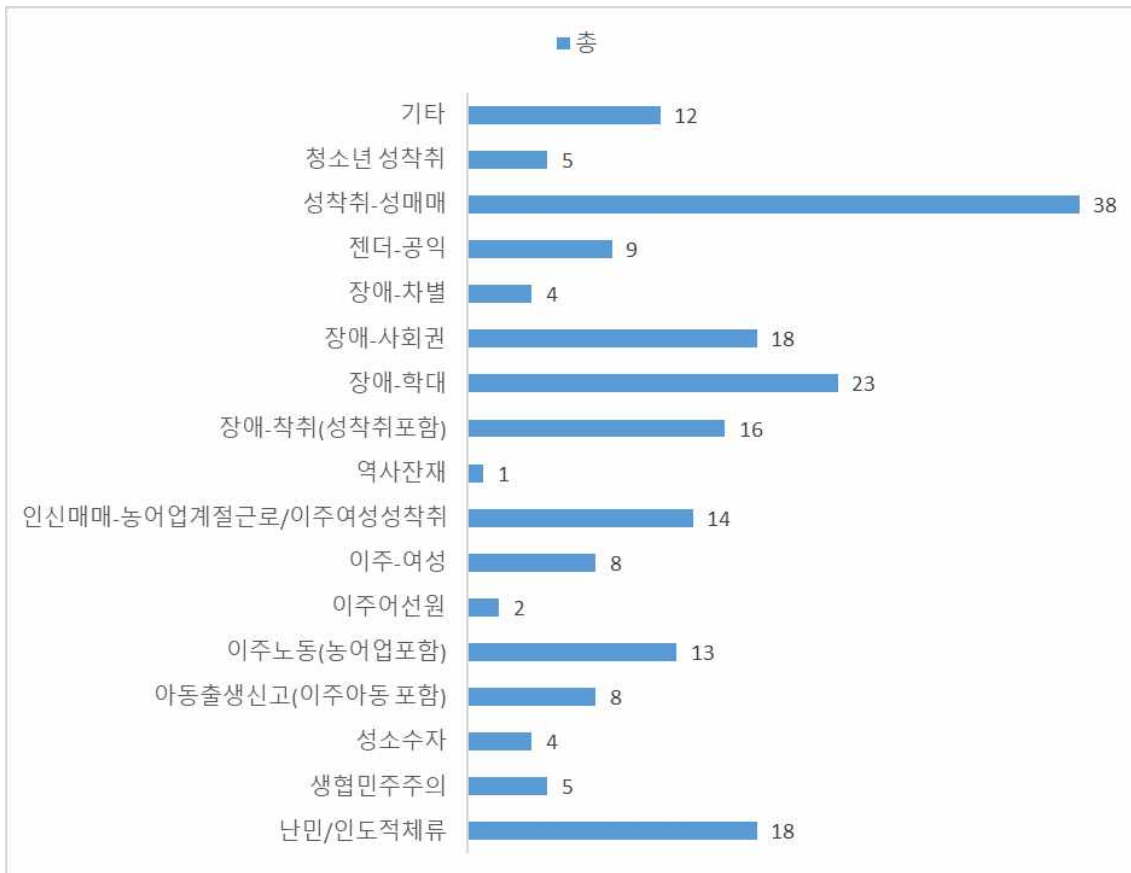
전자소송(민사, 가사, 행정소송만 확인 가능함)과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표를 가지고 낸 결과이기에 소송이 아닌 지원들(출입국, 노동청 대응)과 형사 피해자 지원을 한 것들은 누락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록은 아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경우(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농어업계절근로 인신매매피해, 예술홍행비자 성착취 인신매매피해해), 소송과 별도로 연구조사가 진행된 경우(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광주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등 다양한 과정과 결과들이 있었다.

○ 그러나 그와 별개로 (숫자로 보일 수는 없으나) 장애인, 아동, 성착취 피해자, 이주노동자, 난민들의 형사 행정절차에 직접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담당 공무원, 사용자, 사법기관, 수사기관)들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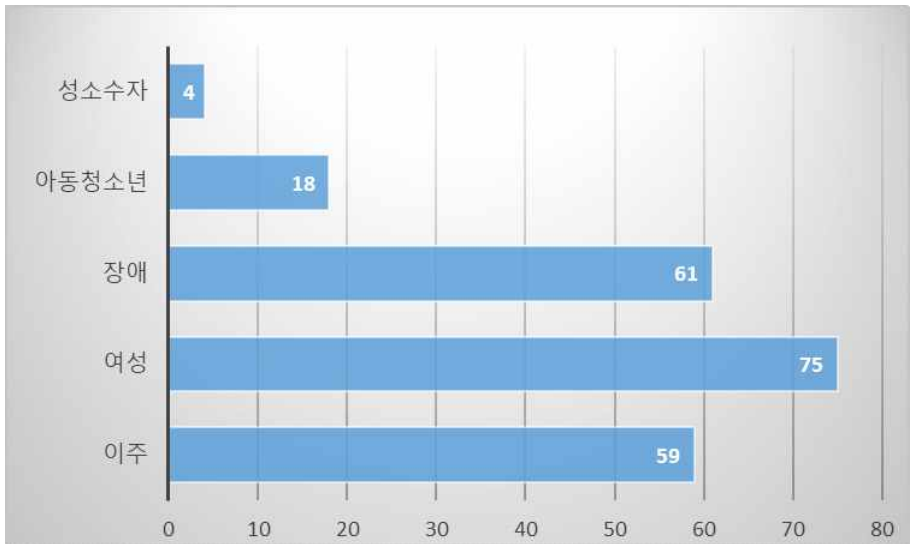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필요한 변화의 씨앗들(통번역, 수화통역,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참석)을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뿌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2) 주제별 사건 지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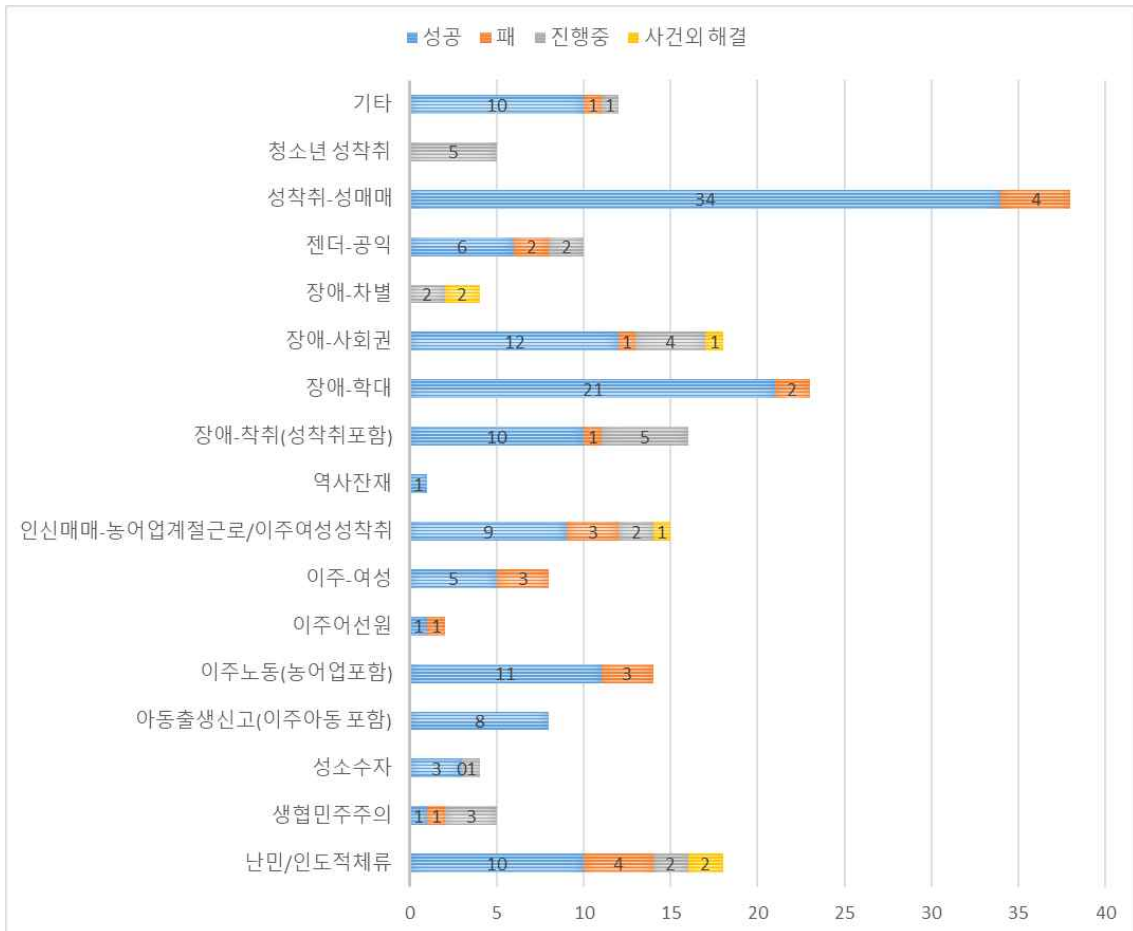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주제는 성착취, 성매매 분야이다. 세부주제들을 다시 대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면(소수자 지위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복수 계산) 여성(특히 성착취), 장애, 이주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행의 사건들이 지역 내 인권현황과 관련한 통계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모든 사건들이 지역의 활동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동행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성착취, 장애인 착취, 이주 노동자가 갖는 문제들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끈질기게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 주제별 승패율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승소 사건 주제가 아니라 패소 사건 주제를 더 살펴야 한다.



- 인신매매, 난민, 이주노동 분야는 다른 주제에 비하여 패소율이 더 높다.
그러나 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이 도표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성착취 성매매, 농어업계절근로 이주여성 성착취 사건의 패소율이 높다.
성착취 성매매 문제는 동행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천착해온 문제이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 이주여성 성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고소 사건에서 다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이 말을 바꾸어하면 어떤 사건들은 재판에 이르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착취 피해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인신매매의 인식에 있어서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노동력착취 문제는 수사 자체가 인신매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된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에 있어 패소율이 크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예 다른 죄명(단순한 사기죄, 근로기준법)으로 수사되고 기소되고 있고 일단 그 결과라도 승소라고 보아 정리 하였기에 이 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승소율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예 송치되지 않는 각 사건들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신년부터는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다시 목소리를 내보아야겠다.

○ 기타 사건의 주제는 다양하다. 방송국 비정규직, 활동가 표현의 자유, 환경, 산불진화대원, 청소년 현장실습노동,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이 있다.

3) 함께 연대한 단위들

동행이 10년의 활동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한 문제에 천착하여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던 활동가들 덕분이었다. 동행이 이룬 10년의 성과 중에 가장 값진 것은 지역의 활동가들과의 끈끈한 접점과 유대감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사건을 함께한 지역 인권활동단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광주민중의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노동권익센터, 실로암 사람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레자연드림 파크지회, 두레방, 사회적경제노동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주와 인권 연구소,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 연대한 범조단위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원곡, 화우공익재단, 난민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다. 동행이기에 가능했던 연구용역

○ 2019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역의 첫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대체의 활동이 공고해졌다.

○ 2020 전남 농어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세미나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단위를 넘어, 정영이 농민,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엄진영 박사, 조선대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송한수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한 세미나로서 농어민들이 처한 현실들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 2022 전남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 2021. 10. 다시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

력 착취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라남도의 의뢰로 진행된 실태조사였다. 수년간 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전남 지역 장애 인권 활동가들의 축적된 경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4. 처음의 계획과 수정된 계획

1) 처음 계획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5년 정도가 되면 상근변호사 숫자가 5명 쯤 되어, 팀을 나누고, 다른 도시에 지부를 세운 다음, 중견 역할을 할 만한 후배 변호사에게 서서히 운영을 이양하고 8년 쯤 되어서는 단체를 떠나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러나 처음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다. 짧으면 6개월, 길어야 2-3년이 되면 상근변호사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년이 되어도 ‘지역’에 ‘비영리’ 전업 변호사로 일할 변호사는 결국 2-3명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지부 설립은커녕 현재 동행의 재정적자 조차도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2) 변치 않는 것과 수정된 계획

반면 떠나지 않고 남는 이들은 지역의 활동가들이었다. 이주노동, 여성폭력, 성착취, 아동, 장애 등 각 분야에서 떠나지 않고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활동가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동행은 2022년부터 상근변호사 충원보다는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의 활동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활동가를 직접 상근자로 함께 해보고자 하였다. 그 첫 실험이 이기림 활동가(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

관 팀장)였고 두 번째 실험이 뉴스레터 등 홍보를 맡은 위석현 활동가이다. 실험은 순항 중이다.

그리고 만약 지부를 세운다면, 다른 대도시가 아니라 전남의 더 깊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광역시만 벗어나 도 단위로 내려갔을 때 인권옹호의 지형이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이다(물론 서울에 비해 광역시의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시군단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4) 진짜 ‘지역’ 공익변호사로서 다가올 10년

동행은 ‘지역’ 최초, 전남 유일한 비영리전업 변호사단체로서 처음부터 ‘지역’ 공익변호사임을 강조했다. 지역의 활동가들은 공익변호사와 ‘협업’ 한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첫 5년간은 ‘공익변호사’가 어떻게 활동가처럼 활동가들과 협업하여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사건이었던 것 같다. 3-5년이 지날 때에야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동행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연대 제안을 주셨던 것 같다.

동행이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알리는데 5년이 걸렸다면 ‘지역’ 인권옹호단체로서 차별성과 전문성은 9년차 10년차가 되는 작년과 올해부터인 듯 하다. 변호사가 상근을 하기에 법적인 전문성이 있다는 점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그러나 동행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과연 지역의 맥락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자신이 없었다. 하다못해 지역 검경이나 법원의 사정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의 현장(노동청, 출입국, 경찰과 검찰, 법원, 동사무소, 시청, 구청 등)이 10년에 이르니, 동행이 전과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 같다. 10년이 되니, 전남의 당사자들이기에 가진 문제를 ‘지역의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나가는 실력(인맥, 정보력, 법률지원 경험)이 축적되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가고 이끌어가고 해결해가는 진짜 ‘지역’ 공익변호사가 되었구나 싶다.

동행이 이 축적된 경험을 발판삼아 언젠가는 전남 더 깊은 곳으로 지부를 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Ⅲ. 동행이 생각하는 공익소송 개관¹⁾

1. 공익소송 의미 및 동행의 공익소송

공익인권소송은 공익과 인권을 소송의 방식으로 구제하여 사회의 변화로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동원한 공익인권옹호활동은 법률상담, 자문, 법률교육, 입법개선 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법률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소송을 통하여 법해석의 변화와 선례를 만들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집단의 특유한 사회변화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공익인권 옹호활동을 공익인권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행의 소송이 모두 사회변화 전략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공익인권 기획소송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소수자의 목소리와 입장이 드러나야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편견이나 당사자의 취약함으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 결과 소수자의 인권이 함부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동행의 변론은 변호사가 주도하는 기획소송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설사 기획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관련 주제의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해온 사안이 우연하게도 기획소송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공익소송의 시작

공익소송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접수되고 진행된다.

① 특정영역에서 활동을 지속해온 인권단체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의뢰해오는 경우

이 경우 활동가가 속한 인권단체에서 먼저 당사자들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1) 본 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 6 '공익소송실무매뉴얼' 3-18쪽을 참조하였다.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혹은 기자회견을 거쳐 해당 사안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들에게 의뢰를 해오는 경우이다.

동행이 진행하는 사건 대부분이 활동가들을 통하여 연계가 된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② 개인이 직접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동행은 개인으로부터 공익소송 신청을 받는 양식을 두고는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동행이 법률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단순 사익 사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③ 공익변호사(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혹은 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익소송을 발굴 기획하는 경우

동행은 특정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그것을 먼저 소송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의 관련 활동가 단위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연구활동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3. 전략을 위한 질문들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 적절한 수단인가

그러나 지난 10년의 경험상 변호사는 결국 활동가가 될 수 없고, 소송은 승패라는 한계가 있고, 특정 당사자들에 대한 이익으로 운동이 좁아질 수 있으며, 소송의 언어는 당사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한계, 변호사만이 운동 영역에서 돋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은 하지 마시라고 권한다.

2) 입법운동을 바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현황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 국회를 통한 입

범운동 등이 더 바람직할 때가 많다.

3) 공익소송의 결과가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은가?

패소를 하게 되면 문제상황에 대한 그릇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패소하지 말아야 하고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운동의 이유만으로 공익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송을 하면 일단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의 대리인이지만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제도개선운동이 중심이 될 수 없고, 당사자가 아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그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4) 공익소송 제기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가?

5)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재판 이외에 다른 구제 대책을 모두 강구해보아야 한다(인권위 진정, 국민권익위 민원신청,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 등)

6) 공익소송에 적합한 원고를 찾을 수 있는가?

당사자의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 당사자가 끝까지 다들 것을 원하는가, 당사자가 끝까지 다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4. 공익소송 4주체와 동행의 강점(지역의 인권활동가들과 협업)

1) 인권활동가

공익소송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활동가일 경우가 많다. 활동가가 소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고, 언론대응/국회 대응

을 통해 그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활동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

동행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장애, 이주, 아동, 젠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의 발견과 원고 섭외, 기자회견과 같은 언론대응, 제도개선 국회 대응 등에 있어 지역의 맥락 속에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2) 원고가 되어줄 당사자

원고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공익소송은 사실 가장 적합한 원고가 나타났을 때에야 시작된다. 적절한 원고와 만나는 것, 그 원고와 유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중요하다.

3) 전문성을 보완해줄 연구자 등 전문가

산업재해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생협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활동가, 산업안전문제에 천착하는 금속노조의 활동가, 헌법재판소 전문가 증인을 해줄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중요하다.

4) 대리인단

쟁점이 적은 작은 사건의 경우는 1-2인의 변호사가 수행하나, 쟁점이 많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며 소송이 길게 진행될 경우에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는 연차가 높은 시니어부터 연차가 낮은 주니어까지 고루 참여하는 것이 좋다.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은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도 소송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고 법정에서 연륜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다. 중간 연차 변호사들이 쟁점별로 팀장을 맡아 해당 쟁점에 관한 중요 서면 작성 책임을 진다.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은 대리인단 참관 자체로 교육이 되고, 간단한 사건의 첫 소장 작성 혹은 리서치 등을 통하여 참

여할 수 있다.

동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변호사들과 여러 사건에서 공동대리인단을 직접 조직하여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현장과 지역 법조와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장점이 있다.

IV. 구체 사례

1. 지역에서 승소한 배경 : 금호고속 상대 시외버스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가. 사건 개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소송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이하 ‘서울 이동권 사건’이라 함). 서울 이동권 사건은 항소심까지 일부 승소를 하였는데, 2022년 대법원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을 운운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변론재개를 거듭한 끝에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2017. 12.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이자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에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도입하고 광천터미널에 휠체어 승하차 플랫폼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2025. 2. 20. 금호고속에 대하여 앞으로 15년동안 신차 도입 부분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휠체어리프트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593).

서울 이동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시작한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이 서울 사건의 결말 여부와 무관하게 의미있는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나. 광주장차연의 패소비용 지급 결의 및 원고 모집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김상훈, 이소아, 김수지, 홍현수, 노준선, 위서현, 유한별)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대하여 진행한 소송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배영준 활동가를 비롯하여 김은숙, 김영애, 박영석, 윤정표 회원을 원고로 추천하면서 동시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패소비용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광주장차연의 그와 같은 결정이 없었다면 당사자들이 쉽게 원고로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 사건 경과 : 광주 장차연의 언론대응과 승소

광주 장차연과 연대하여 소송을 시작하였고 주요 변론기일 때마다 기자회견 등으로 법원의 주의를 환기해왔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 사건의 결과와 상관 없이 심리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 사건에서 현장검증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민사 제14부 판사님들이 직접 장애인복지관의 개조한 휠체어리프트 버스와 광천터미널의 승하차 플랫폼을 검증하던 기일에 광주 장차연 활동가들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대응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져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활동가들과의 결합을 놓치 않았던 점이 서울 이동권 소송과의 차별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판부가 대법원의 법리를 뚫고 나갈 논리에 대하여 더 치열하게 고민하신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라. 판결 내용

주문과 이유 일부를 옮겨 본다.

주 문

1. 피고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2026. 1. 1.부터 신규로 보

유하게 되는 시외버스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 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에 관하여, 원고들이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5%까지의 버스에, 2027.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8%까지의 버스에, 2028. 12. 31.까지는 전체 신규 도입 버스 중 15%까지의 버스에, 2029.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20% 까지의 버스에, 2030.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35%까지의 버스에, 2032.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50%까지의 버스에, 2035. 12. 31.까지는 전체 신규도입 버스 중 75%까지의 버스에, 2040. 12. 31.까지는 전체 신규 도입 버스 전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각 제공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금호고속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금호 익스프레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금호고속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 .)

이 유

판결문 44쪽 이하

(3) 탑승개연성에 관하여

피고 금호익스프레스가 비록 원고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의 차별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이 향후 피고 금호익스프레스의 모든 시외 버스 내지 그 버스가 운행하는 모든 노선에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결여되어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피고 금호익스프레스 역시 이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가) 이 법원이 피고 익스프레스에게 휠체어 탑승설비의 제공을 명하는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원고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

(나) 시외버스는 오늘날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각종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이동 및 지식, 문화, 기술의 교류와 전파가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시외버스의 이용은 출퇴근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친교·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외버스는 단순한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유지를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지역과 지역을 넘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사회구성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인 원고들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불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 역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들 스스로 내지 조력을 받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상 그 자체로 탑승의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원고들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금호익스프레스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본 것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만일 피고 금호익스프레스의 운행 노선 가운데 탑승의 유의미한 개연성이 있는 노선만이 적극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 가능한 원고들과 그 가족의 주거지, 직장, 학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원고들의 직장, 학교, 가족 및 친척 주거지 등에 관한 석명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동권이 극도로 제한된 장애인으로서 광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직장을 얻거나 진학할 수조차 없었고, 친척과 왕래하지도 못하여 이제부터라도 직장을 구하거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친구들과 왕래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에도, 차별적인 상황에 처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탑승의 개연성 있는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석명에는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년 원고 김은숙, 윤정표는 바다에 가보고 싶어 순천행 버스표를, 원고 박영석은 당시 모친과 누나가 살고 있던 안산에 가기 위해 안산행 버스표를 구매하였다가 휠체어가 실리지 않아 탑승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 중 일부는 이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등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었으며, 제2예비적 청구취지로 대구에 소재한 대학교에 진학할 꿈을 가진 원고 배영준의 경우 광주-대구 노선을 특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버스표를 구매하였다가 반환하였던 광주-순천 노선, 여행을 가고 싶은 곳으로 바다가 있는 도시이며 기차가 다니지 않는 광주-해남, 광주-강진 노선을 특정하였다.

결국 가족, 친척, 취업 유무 등은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 입장, 이해관계, 가치관, 경제적 상황,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장애인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이나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장래 이용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내세워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확대 내지 재생산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나아가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의 개념은 내외부적인 요인에 수반하여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지, 정형화된 고정적 개념이 아니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현재 탑승한 적이 있거나 탑승을 시도한 적이 있는 노선으로 특정하기보다 장차 원고들이 탑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넓게 해석하고, 해외 사례처럼 탑승 전 2~3일 이내 미리 예약을 권고함으로써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배정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다.

2. 기획 법제도 개선 : 농어업 계절이주노동자 관련 법제 개선 운동

가.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농어업 이주노동자

동행 초반에는 하남산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사례가 많았다. 주로 체불임금과 사업장변경 관련 대응이었는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결속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문제 대응은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갔고, 변호사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다가 전남의 농업(미나리 하우스, 딸기 농장, 벼섯 농장 등)과 어업(양식업, 20톤 미만 연근해어업)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례를 지원하면서 농어업 노동 자체의 취약성, 농어업 이주노동의 취약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농어업은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고,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작업 환경 자체가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하여 사고율이 월등히 높고, 인건비에 수반하여 상품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이 모든 원인이 종합되어, 농어업 노동환경 및 제도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농어민들에게도 열악하다.

농어민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고(농어업안전재해보험이 있으나 보장범위가 좁고 예방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기에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법 의무 가입이 아니며, 그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을 수 없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소액체당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또한 농어업은 농한기 휴어기로 인하여 단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자연에 따라 노동력 투입이 무척 유동적이기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근무시간 등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농어업의 경우 미등록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나. 농어업 계절근로의 의미 및 문제점

1) 의미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연중 상시 노동력 제공이 필요하고 가능한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 E-9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노동자들에게도 사용자인 농민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2015년 무렵 농어업 계절근로 E-8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던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에서도 계절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였다(농어업이기에 전남에서 더 그렇다).

2) 문제점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이 있다. 계절근로 E-8 비자로 입국하여 일하는 농어업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놀랍게도 법률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과 각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낸 조례들이 전부이다. 별도 법률은 없고, 겨우 관련이 있는 법조문은 단 하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뿐이다.

또한 조례의 명칭을 보면, 농어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이렇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조례,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인력난 해소의 도구이거나 지원할 대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조문 10여 개 안팎의 빈약한 내용이다.

이런 시각은 국무총리실이 2024. 6. 20. 발표한 '산업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소멸을 '해결'하고, 노동력을 '해결'할 도구로서, 똑똑하고 안전한 이주노동자만을 싼값으로 쉽게 데려오고, 쉽게 쫓아내도 문제 안 되게 정부의 속셈. 그리고 그 속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도 아주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제 안에도 편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하여, 오로지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급급한 방식으로 계절근로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다 보니, 사람장사하는 브로커를 통한 이탈보증금, 송출비용 증가, 여권과 통장 관리, 수수료를 가장한 불법적 임금공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

3) 인신매매 성립 관련

이탈보증금, 수수료, 여권과 통장 관리 이런 것들은 모두 인신매매방지의정서(대한민국 비준동의함),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3호)에 따라 인신매매의 한 범주라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는 범죄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인신매매방지법 제4조 제1항).

동행은 올해 초 2024. 1. 18. 전라남도 H군에서 농업 계절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착취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구출하여 형사고소 하면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전라남도 및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W군, B군, J군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결국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현재 4명의 당사자만이 여러 가지 위험(본국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남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부조리한 상황이 언젠가 바뀌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다. 함께하는 단위

광주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민변 광주전남지부, 남원농민회

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첨부)

동행은 당사자들에 대한 개별적 법률지원을 넘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대한변협 이주난민TF의 계절근로자 대응팀과 결합하여 관련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정도에 이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및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담아보려고 하였다.

3. 그 밖에 동행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협업

가. 이주민 법률지원단에서 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변호사 세미나, 통역인 법률용역 교육, 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정기 법률상담(광주이주노동자센터->이주민지원센터)

나. 염전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대응

법률지원, 기자회견, 실태조사, 정책제언, 당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다.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V. 나가며 - 동료 변호사들께 드리는 제언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변호사로 살면서 공익 인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동행의 여러 공익소송

들을 함께 해낼 수 있었고 동행의 10년도 가능했다.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의 요청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주제로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2명의 상근변호사가 모든 대응에 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답하지 못하지 못한 요청들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상근 변호사 충원이 절실하고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또 꼭 전업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부담은 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욕구와 경험도 채우고, 지역 인권의 안전망도 확장해가는데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동행이 가운데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동행의 변론이 지역 법조와 더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면 널리 알리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역할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변론이 지역 사회 내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동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부할 맛 나는’ 비영리단체라고 주변에 적극 홍보해주시고, 아직 정기후원하지 않은 분들도 정기후원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친다.



<정기후원 링크 큐알코드 - 핸드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보시면 정기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첨부 1. > 농어업인력지원법 개정안 ver2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p> <p>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호..(중략)...</p> <p>4. “<u>외국인 계절근로자</u>”란 <u>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²⁾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u>3).</p> <p>5. “<u>농어업고용인력</u>”이란 <u>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6. * <u>지방자체단체 등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 포함 예정</u></p>
<p><문의 주신 내용 관련></p>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호(2019년 개정되어 E-8 체류자격 제외)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이 농어업계절노동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인권 관련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간명하게 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p> <p>그와 같은 경우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관련 규정 전체가 농어업계절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제4조 외국인력</p>	

정책위원회, 제2장 외국인력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제4장....).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3조 적용범위 규정에서 선원법 예외 규정 같은 조항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넣거나, 아니면 제2조 정의 규정 자체를 개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몇장과 몇장은 계절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고용법률 자체에서 (2조 개정 혹은 3조 개정) 그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법률 의 소관 위원회는 환노위이기에 어떤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중략)...</p> <p>5. <u>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p>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②

<p>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p> <p>-----</p> <p>-----</p> <p>-----</p> <p>-----</p> <p>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인권 현황 등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등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 	<p><전면 개정></p> <p>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심사 및 정책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② <u>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u>

<p>한 사항</p> <p>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p>	<p>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및 정책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MOU 체결 과정의 투명성</p> <p>3.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p> <p>4. 계절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p> <p>5.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p> <p>6.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위 2항 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장이 된다.</p> <p>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계절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관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p>⑥ <u>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u>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u>」)4)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p>제10조 (외국인 농어업 계절근로 등) ① <u>법무부, 고용노동부</u> 등은, <u>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5</u>에 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근로자를 농어업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당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u>법무부 및 고용노동부</u>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지원</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련 도·특별자치도·공공형 농어업 인력중개센터</u>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지원 및 감독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지자체 업무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⁵⁾으로 정한다.</p>	<p>감독</p> <p>3. <u>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u></p> <p>4. <u>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 정기 실태조사</u></p> <p>5.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⁶⁾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입국관서 등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구인 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령⁷⁾에 따른다.</p> <p>②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입국관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제2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이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p>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제2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구직자 선발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거친 사람을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각 시험의 실시기관 및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호 지방자치단체장등은 농림수산부 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p>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 부분은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예정입니다.</p> <p>제10조의5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허가) 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제2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령 또는 농림축산부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근로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조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업경영체 혹은 제12조에</p>
--	---

	<p>다른 <u>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u>에게 외국인계절근로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u>농어업경영체</u> 혹은 제12조에 따른 <u>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u>에게는 지체 없이 근로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장등 및 제12조에 따른 <u>농어업고용인력지원기관</u>이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의6(근로계약)</p> <p>① 제2조 제6호의 사용자등이 제10조의5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 법무부는 2024. 11. 26. 계절근로자 업무허용범위 확대 및 최소임금보장기준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자 인권보호</p>
--	---

	<p>강화 위해 각계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p> <p>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0조의5에 따라 근로허가를 받은 사용자등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p> <p>④ 제10조의7에 따라 재입국추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와 사용자등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6(취업활동 기간 연장) 제10조의5 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p> <p>제10조의7(재입국추천)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계절근로자로서 제10조의6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p>
--	--

	<p>용자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체류자격별로 성실근로자 요건 포함 예정</p> <p>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 횟수 및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 관련 준용규정 포함 예정</p> <p>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8(취업교육 및 각종 지원)</p> <p>①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인권 및 안전 등 관련 교육(근로자 인권 및 산업 현장 안전 등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사용자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제1항의 교육을 받을</p>
--	---

	<p>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및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조례로 정한다.</p> <hr/> <p>제10조의9(지방자치단체장등 및 사용자등 교육)</p> <p>① 지방자치단체장 등 및 사용자등은 노동관계법령·인권, 농어업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최초 외국인계절근로 초청 시 및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p>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례로 정한다.</p> <hr/> <p>제10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 등)</p> <p>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등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사용자의 보험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p>
--	--

	<p>할 수 있다.</p> <p>제10조의13(근무처 변경)</p> <p>①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 폐업, 사용자 등의 고용허가의 취소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권침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계절근로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p> <p>제10조의14(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의2(공공형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등)</p> <p>*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지정 관련 내용 포함 예정</p>

<p>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⁸⁾</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p>	<p><신설></p> <p><u>제13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제한)</u> ①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한다.</p> <p>1.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p>

<p>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 파견법을 위반한 자/ 임금을 제불한자 /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받은 자 /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혹은 중대재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p>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p>
	<p>제13조3(차별 금지) 사용자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의4(기숙사의 제공 등)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외고법제 22조의2 참조).</p>
<p>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p>	<p>제13조5(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등 각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그 지원 근거 내용 포함 예정</p>

<p>복지지원)</p>	<p><신설> 제14조의2 (금지행위) * 현행 법무부 지침 상 내용을 포함할 예정. (-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외국 지자체는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명시 - ‘양 국가의 지자체, 고용주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사전교육 등 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관리비용(수수료)을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력 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을 명시 -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 보관 금지 -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관련법 준수 의무 등) *현행 법무부 지침 상의 별점 부과 등 제재 사항 내용 포함할</p>
--------------	--

	<p>예정.</p> <p>(- 위 준수사항 위반 시 별점 부과 및 확인서 발부/ 별점 관련 대통령령 위임 등)</p>
<p>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지자체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p>	<p><18조의 2 신설></p> <p><u>*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자격 관련 특혜 관련 내용 포함할</u></p>

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u>예정.</u>
	<u>*각종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 및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련 내용 포함 예정.</u>

- 2)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함.
3) 현재 지역특화 비자에 대한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
- 4)
5)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법무부 지침

<p>해외 계절근로자 유치 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일</p> <p>① 내국인 구인 노력 - 구인 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희망 지자체(시 군)</p> <p>② 구인 방법 - (필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 - (권고) 워크넷,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p> <p>③ 구인 내용 등 -구인 기간 : 1주 이상 - 업종 : 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인원 :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이상 -기타 : 근로시간 임금 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조건</p> <p>④ 구인 공고 시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전</p>

- 8) 각 국가언어별 상담창구 및 브로커 착취 관련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옹호기관과 협업 마련 필요

인권옹호 활동과 지역 공익변호사의 협업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남궁미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2005년 7월 18일 성매매상담센터 언니네로 시작하여 2006년 1월 9일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지역여성의 인권향상, 여성복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특히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종합적 지원과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자활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주요 활동

- 24시간상담 및 긴급구조
- 법률지원 · 의료지원
- 기관연계(쉼터 및 자활)
- 현장방문상담
- 성매매예방활동

여성자활센터

- 성매매피해자활지원

주요 활동

- 자활참여지원사업(공동작업장,인턴쉽)
- 직업훈련(검정고시지원)
- 자활비전 및 역량강화
-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사회적자원연계

청소년지원시설

- 성착취피해청소년 생활시설

주요 활동

- 구조 및 보호사업
- 보호활동 : 의식주제공
- 법률지원 · 의료지원
- 자활 · 교육지원 (검정고시 등)
- 치유회복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 :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과정을 응원하며 커다란 날개짓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높이 날아 자신의 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발견

- 사이버 아웃리치
- 오프라인 아웃리치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 연계
경찰, 검찰, 타 기관 등
- 사이버 상담 및 현장 상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통합지원

- 법률지원
- 의료지원
- 심리지원
- 주거지원 연계
- 성교육 등 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 생활지원

자립·자활

-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 상급학교 진학
- 자활센터 등 일자리 연계
- 자격증 취득 연계

사후관리

- 내담자 심리적 지지
- 부모 심리적 지지 및 상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연도	상 담 인 원	긴급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연계지원	
		인 원	건수	인 원	건수	인 원	건수	인 원	건수
2021	24	3	7	24	211	24	15 6	0	3
2022	29	4	4	26	209	27	91	2	11
2023	42	6	15	35	631	22	21 5	12	13
2024	72	5	9	58	995	48	62 6	17	17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낙인

※ “낙인이란? 씻기 어려운 부끄럽고 욕된 평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떤 낙인이 존재하는가 ?

- 성매매업소도 하나의 산업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
- 성매매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동을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 요즘 누가 강제로 하나? 강금과 폭력이 없는 성매매는 폭력이 아니다?
- 청소년성매매의 가장 큰 원인은 성을 팔기로 결정한 십대여성이다?
- 성인과 아동도 연인관계가 가능하다?

누가 낙인을 주는가?

2015년 여수유흉주점 여성 사망사건

- 성매매피해여성
 - 선불금 등의 문제로 폭력에 노출 되어 사망
 - 동료 신고 및 가족 진정 무시
- # 초동수사미흡, 경찰유착

2019년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경찰 조사 건

-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착취 피해자
 - 경찰의 일부 고소 취하 강요 등
 -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 # 경찰의 낙인, 조사 시 부당한 대우

2023년 음란물 유포죄 기소 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피해자로 신고
 - 피해자조사 1회 진행 후 음란물유포 피의자 전환
 - 피의자 특정 못했음에도 무조건 신고인만 피의자 전환
- # 아동청소년보호보다는 입건 중시

2024년 의제강간 고소 건

-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
 - 미성년자때 만난 연인사이 성관계
- # 만13세와 만19세 연인관계로 인정/ 만14세와 만20세가 되어도 연인관계로 인정

누가 낙인을 주는가?

2015년 여수유흉주점 여성 사망사건

- 성매매피해여성
 - 선불금 등의 문제로 폭력에 노출 되어 사망
 - 동료 신고 및 가족 진정 무시
- # 초동수사미흡, 경찰유착

2019년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경찰 조사 건

-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착취 피해자
 - 경찰의 일부 고소 취하 강요 등
 -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 # 경찰의 낙인, 조사 시 부당한 대우

2023년 음란물 유포죄 기소 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피해자로 신고
 - 피해자조사 1회 진행 후 음란물유포 피의자 전환
 - 피의자 특정 못했음에도 무조건 신고인만 피의자 전환
- # 아동청소년보호보다는 입건 중시

2024년 의제강간 고소 건

-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
 - 미성년자때 만난 연인사이 성관계
- # 만13세와 만19세 연인관계로 인정/ 만14세와 만20세가 되어도 연인관계로 인정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전문성

• 전문가란? 특정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성착취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성착취 관련 문제에 전문가는 누구인가?
- 성착취 법률 문제의 전문가는 누구인가?

성매매피해 지원 시 상담원은 전문가인가?

- 성착취구조를 이해하는가?
 - 성산업의 변화를 알고 성산업 착취구조안의 여성들의 삶을 본적 있는가?
 - 공권력과 성매매알선 및 조장세력간의 유착비리 문제와 사회전반에 부족한 여성인권 의식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 성매매 업소 안에서의 인권침해와 감금, 감시는 없다고 하는데 성매매집결지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들어봤는가?
 - 온라인상의 성착취구조 및 성착취 현상을 알고 있는가?
- ※ 성매매지원 시 성착취 구조를 이해한 법률전문가 필요

전문가의 강력한 힘

-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중 - 언니네에서

여수유흥주점사 망사건

주요활동

- 언니네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여성들 법률상담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법률지원단 구성 (15명) 및 공동 변호인단 구성 (8명)
- 진료기록 및 부검기록 분석
- 의견서 제출
- 공판기일 참석 (10회이상)
- 민사소송 진행

수사기관에 대한 여러차례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제출
특히, 국화수 부검자료에 대한 의견서 및 진료기록 관련
전남대 법의학 교수 면담 등을 통해 기록분석에 대한 의
견서 제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

주요활동

- 언니네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상담
- 조사 동행 : 상담원 동석의 필요성 논의
-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 “ 고소인들은 성매매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닙니다“

선불금 제공 및 채무 독촉이 성매매피해자의 착취를
위한 수단이므로 피의자로 기소하면 안된다는 의견서
제출

전문가의 강력한 힘

-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중 - 하랑 에서

음란물 유포 기소 건

주요 활동

- 하랑 상담원 및 피해자 상담
- 의견서 제출 및 담당수사관 통화
- 사이버수사대 담당수사관 및 과장 면담
- 의견서 추가 제출

- 성착취피해자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검거 및 조사 없이 바로 피의자로 입건 된 문제제기 및 성착취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를 별건으로 입건한 문제에 대해 의견서 및 면담으로 문제 제기: 무혐의 처분. 피의자 검거

의제강간고소 건

주요 활동

- 담당 상담원이 고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 문의: 의제강간으로 불 수 없다고 함
- 하랑 상담원 및 피해자 상담 후 고소장 접수
-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 처음 온라인을 통해 만남. 당시 만14세피해자와 만19세 피의자가 연인사이로 발전. 이후 만15세의 피해자를 성인이 된 만20세 피의자가 성착취함. 가출 후 갈곳이 없는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주장.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사회적 연대

• 사회적 연대의 힘 : 함께하는 가치와 그 중요성

연대란? 사회가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지는 것

사회적 책임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

협력과 연대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

공공성 :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

연대의 가치

-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 보호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 공동체 의식 회복

※ 성공적인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위한 필수 역량 : 공감과 소통능력,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 리더십 협업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 문화적 민감성

사회적 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지역공익변호사의 협업”

1. 성착취 구조에 대한 이해
2. 사회적 낙인에 대한 투쟁·피해자 목소리 대면
3. 현행 법률의 협소한 해석의 한계를 극복 - 경찰·검차 면담, 보도자료 배포, 집회참여 등
4. 법률자문단 구성 등 연대 확장

사회적 연대 - 사회 변화 모색 및 정책 제안까지



-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공론화 함으로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법과 정책을 바꿔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함
-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 함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법률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구성

- 총 10명
-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4명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위서현
-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새롬
- 법무법인 평우 류리
- 변호사 정미라 법률사무소 정미라
-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 문호세

활동

- 자문단 간담회 3회 진행
- 사단법인 두루 온마을 Law 사업 진행
- 감염병 걸린 40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 공동 대응
- 판결문 분석 및 공유
-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사례 공유 및 지원체계 마련

법률자문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

- 지역 내 경찰, 검찰 등 사법체계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편견 허물기
- 법률문제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함



함께하는 가치의 중요성

1.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다. 소외된 목소리들이 함께 나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서로 돕고 지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3. 사회적 연대는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안정성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누군가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라는 힘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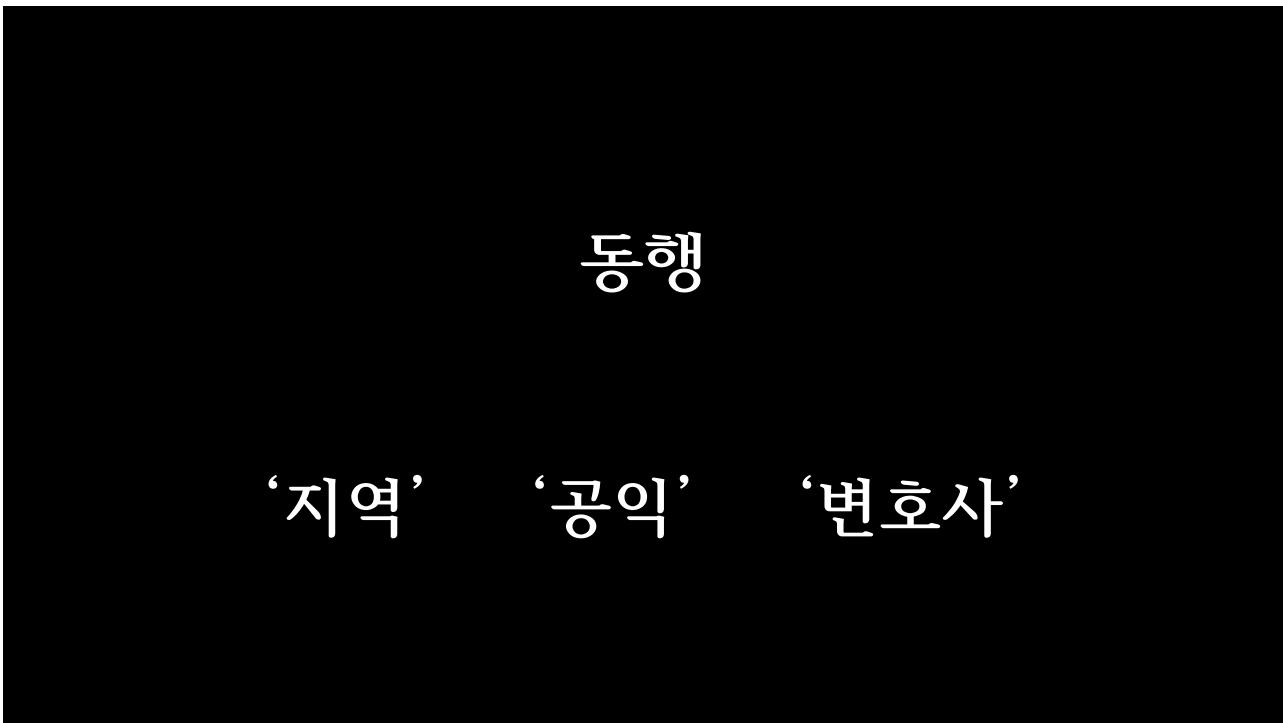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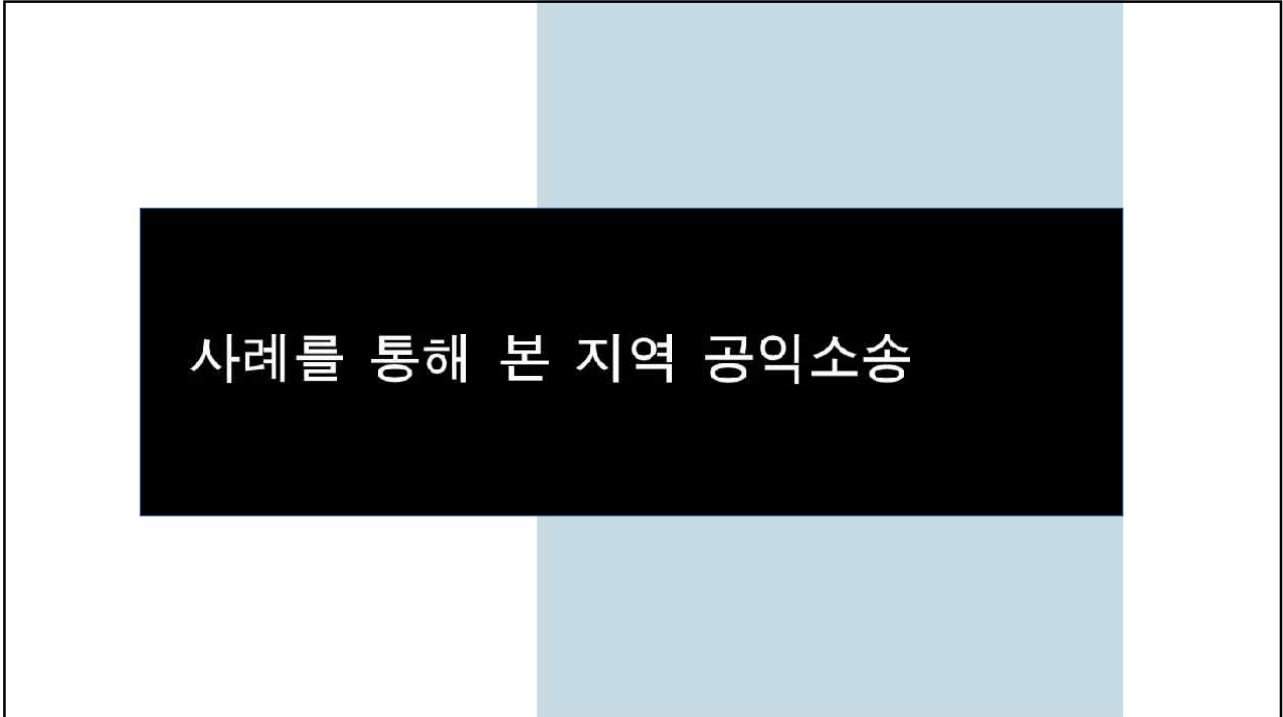
법적인 조력자를 넘어 세상을 향한 첫 걸음에 함께하는 동행이 되고 싶습니다.

THANK YOU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도 례

<토론문 1. 민주노총 법률원 김성진 변호사 >



1.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지역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 최근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인권 침해가 다양화, 간접화, 탈법적이고 모호한 경계 속에서 발생함.
- 기존 법 체계가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발생.
- 전략적인 법적 방법을 통한 해결(사례를 통한 구조 문제 해결)을 고려할 사건이 많아짐.

» 1. 지역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문제
2. 지역 특성에 따른 인권 문제 (농어업 이주노동자)
3. 인권 감수성 차이에 따른 인권 문제 (성수자 문제)
4. 인적 관계로 인한 은폐 문제
5. 법률 지원 부족의 문제

» 1.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 전남 지역 변호사의 헌신 속에서 인권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 공익 사건 전담 변호사의 부재
- 사건에 비해 지원 변호사 수의 부족
- 피해자의 접근 어려움
- 지속적인 연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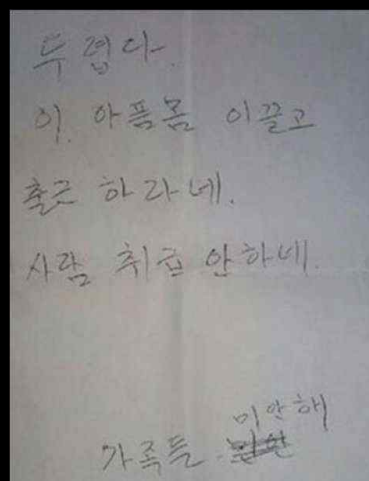
» 3.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행으로 인한 변화

- 접근성 향상
- 즉각적 대응
- 전문적 대응
- 지역 기반 인권 네트워크 구축 기여

» 4. 동행과 민주노총 법률원 사례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자살 사건



두렵다.
이.아픔을 이끌고
충군 하라네.
사랑 취급 안하네.
가족들 ~~원한~~ 미안해

» 1. 동행과 민주노총 법률원 사례

1. 구조적인 문제
2. 진술 확보의 어려움
3. 법률적 어려움

» 4. 동행과 민주노총 법률원 사례 - 그 외



경향신문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2명 순직 인정



이길연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는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살인인 거죠. 집배원들은 평상시에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인력을 투입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기존의 동료들에게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한 거죠." -김성진 변호사

» 4. 동행과 민주노총 법률원 사례



우리는 동행과 동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

<토론문 3>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 협업

김인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운영의 목표와 취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2019년 로스쿨에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내부 기구입니다. 기존 리걸클리닉센터는 법률상담, 소송참여 기회 제공 등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공익법률센터는 이러한 실무 중심의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시에 로스쿨의 공익적인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운영과 발전을 중심으로 하되, 리걸클리닉 수업에 활용되는 사건을 임상교수 등이 직접 수행하는 실제 사건으로 선정하고, 공익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을 무료 수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업을 통한 사건 수행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건 수행이 가능한 변호사 자격 있는 임상교수와 지도변호사가 센터에 상근하고 있으며, 공익법률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익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및 법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가 직접 기획한 여러 분야와 형식의 공익 프로젝트를 매년 10개 이상 개설하여 학점 등과 무관하게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과 연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의 이러한 사회공헌 방식의 교육 및 프로보노 운영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을 사명으로 하는(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로스쿨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이라는 조직은 훌륭한 법조 인력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 조금만 더 공익적 관심을 포함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며,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시야와 경험, 법조인으로서의 공익적 마인드와 책임감 등을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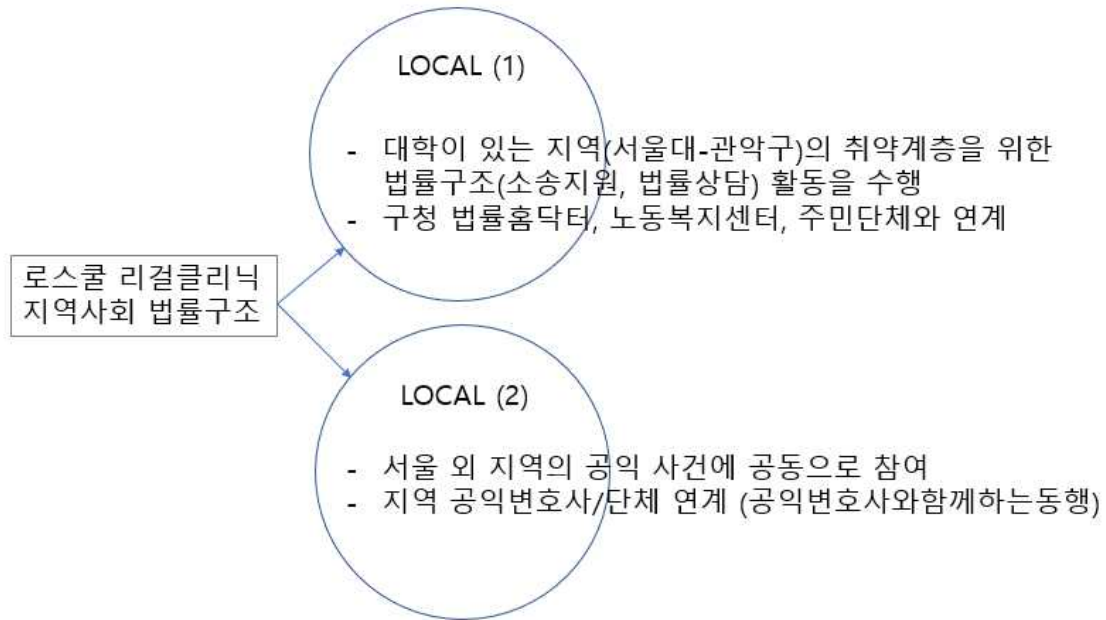
2.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 협업

○ 공익법률센터의 ‘지역사회’ 와의 두 가지 협업 방식

공익법률센터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실무교육을 하는 동시에 공익적인 법무 활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역의 법률구조 활동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 하여, 관악구 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과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관악구 법률상담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악구 주민연대(주거복지센터 운영)와 같이 관악구 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과 주민단체와 연계하여 사건을 수입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서울 외의 지역 공익단체/변호사와 연계하여 그 지역 내의 공익 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과의 협력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동행이 있는 광주가 이러한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지역 공익사건을 협업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 연계의 두 가지 방식

○ 로스쿨이 지역 공익소송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 동행과의 협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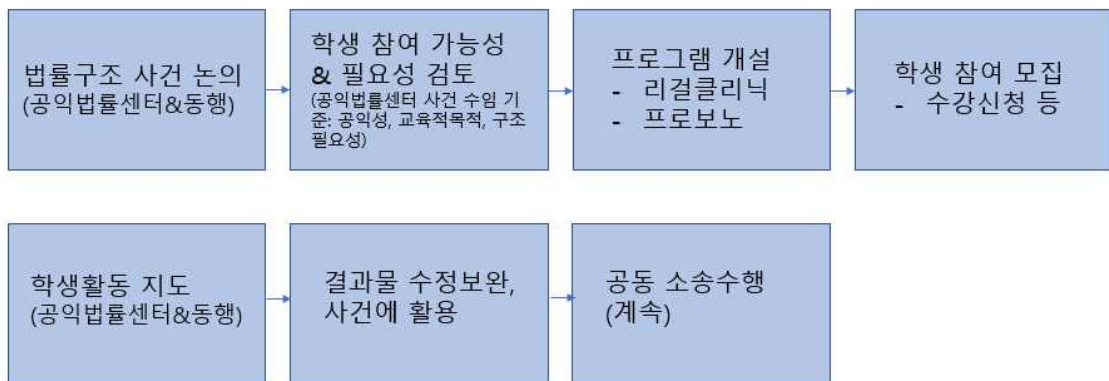
공익법률센터는 2021년부터 동행, 전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와 3자 MOU를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 및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와 동행 사이의 2자간 MOU가 아닌, 전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3자 MOU를 맺은 이유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관악구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에 전남대 로스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전남대 로스쿨의 인프라와 법조 인력이 광주 지역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익법률센터의 동행과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행에서는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공익사건을 제안해 주시면,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들이 공동 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합니다.

공동 수행하는 사건에서 리서치나 서면 작성 등 소송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살핀 후 “프로보노 프로그램” 또는 “리걸클리닉 강의” 을 개설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을 위한 교육의 의미만 남고, 실무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생 참여가 결정되면,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사건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운영합니다. 동행의 변호사님들이 학생들의 사건 내용과 소송수행 방향 중심의 특강 또는 지도를 함께해 주시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임상교수와 변호사는 서면 작성 방법이나 법리 등에 대한 지도를 맡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최종 리서치 자료나 서면이 완성되면, 동행 변호사님들과 공익법률센터에서 사건을 공동수행하는 변호사들이 학생들의 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에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당사자 면담에 참여할 수도 있고, 변론기일에 참관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동행과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필요하고 가능한 기회가 생기면 (예: 1심 준비서면 작성 작업을 학생들과 함께하고 판결 나온 후, 항소심에 제출할 서면에 리서치가 필요한 경우) 다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들 중 연1회 이상은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리걸클리닉과 동행의 공익소송 공동 수행 및 학생 참여 방식

○ 동행과 함께했던 몇 가지 지역 공익소송 협업 사례

(1)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과 체류자격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

공익법률센터에서는 난민 사건들을 종종 다루어 오고 있는데, 난민 사건의 특성상 지역 공익소송으로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결합하여 기여하기에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사건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과 국적국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과 리서치 능력이 모두 필요하고, 많은 자료들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사건에 참여하여 해외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난민 신청자들의 실상과 어려움을 알리는 동시에 행정소송의 실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동행이 수행하던 난민 사건의 당사자는 광주에서 일하고 활동하던 외국인 이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당사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소장 단계부터 서울대, 전남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면을 작성하였고, 난민신청자 국적국에 대한 동향과 난민신청 사유 관련 참고자료들을 학생들이 리서치하고 영문 자료의 경우 로스쿨학생들이 번역을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에는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수 언어의 경우 번역 비용과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2)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학대 사건 등 손해배상청구

공익법률센터는 동행이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 학대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전이나 양식장 같이 사건 발생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안의 경우, 동행과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대 학생들이 접해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사건들의 수행 단계마다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

고, 공익법률센터와 동행의 변호사들은 학생들의 서면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서면을 제출해 왔습니다.

(3) 인권침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동행이 수행하는 공익소송에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 이외에도, 동행에서 진행한 인권침해 연구 프로젝트에 공익법률센터의 임상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한 경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침해 상황과 문제 등을 교육하고, 함께 광주에 내려가 단체 등을 방문하고, 동행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리서치를 학생들이 수행하면 교수가 적절히 지도하고 수정한 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 협업의 이점

위에 소개한 사례 외에도 공익법률센터와 동행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건과 여러 방식으로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익소송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동행과의 협업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중심의 사고와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이슈를 다루게 하고, 지역의 취약계층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배움이 됩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동행의 변호사님들과 만나서 기회도, 동행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듣는 것도,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좀 더 넓은 시야를 주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작성하는 서면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때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기도 하고, 학생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신한 관점이 소송 수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로스쿨 학생들은 특히 리서치나 자료 정리를 매우 잘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외 자료 정리나 판례 아카이빙과 분석 같은 업무를 함께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공익소송은 그 특성상 기존 판례 법리에서 한 발 나아간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작업에 참여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단체는 인력 구조상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붙잡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로스쿨과 이 부분을 협업하면 특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행이 수행하는 공익사건들은 사건 당사자들이 인지대 송달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취약한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공익소송 지원 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협업의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3. 지역 공익소송 협업, 더 잘 해나갈 수는 없을까

로스쿨은 전국 각 지역의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25개 로스쿨 중 절반이 넘는 14개 학교가 수도권(서울 12개, 경기인천 2개)에 몰려 있긴 하지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의 권역별로 1~3개의 학교에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광역이긴 하지만) 각 권역마다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수진(실무가 출신 포함)과 예비법조인인 학생들이 일정 수를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법조인력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책무에 비해, 사회에 공헌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센터의 이러한 실무교육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모델을 다른 로스쿨에도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아직은 갈 길이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각 로스쿨에는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있고, 이들이 실무교육을 수행하면서 충분히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미국과 유럽의 법학부와 로스쿨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였고, 미국의 경우 특히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로스쿨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 로스쿨에 홈리스를 지원하는 리걸클리닉 수업이 개설되고, 로스쿨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나갑니다. 마약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약 관련하여 과생된 법률 이슈인, 범죄 경력으로 인해 취업과 재사회화가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리걸클리닉이 운영됩니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베테랑 클리닉이 개설되고, 이들을 위한 정기 법률상담도 리걸클리닉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수행합니다. 유럽의 경우 한창 난민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난민을 지원하는 센터를 로스쿨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난민신청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스쿨과 지역사회의 법률문제, 특히 공익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이슈에 접근하거나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은 얼마든지 그 형태와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이나 공익법률센터와 같은 형태의 운영을 모든 학교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키워내고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광주에서는 동행이 자리를 잡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지방변호사회와 로스쿨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익소송, 법률구조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에게는 배움과 공헌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4>

두루 상근변호사, 부산에서 살아남기 - 가능한 가늘고 길게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1. 첫 번째 발제문에 대한 소회와 질문

이소아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전업공익변호사 단체의 10년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가 큼니다. 지역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미지의 영역이거나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험이 아닌 살아있는 사례가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공익전업변호사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종종 받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의 저 말고는 광주에 2분(이소아, 위서현 변호사님) 계신다고 말씀드리면 듣는 분들이 모두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광주의 두 분이 가깝고 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누적되면서 존재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고민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3년, 5년, 10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도 멋집니다. 소개해주신 광주 장차연과 연대한 소송은 장애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화제입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특히 “법원의 석명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밝힌 과정에서 당사자와 장애단체와 대리인단의 노력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활용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두가지만 추린다면 ① 지난 10년의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소했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② 위 시외버스 소송을 준비하거나 계속하시면서 임시조치 신청은 혹시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고

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두 번째 발제문에 대한 소회와 질문

남궁미 활동가님의 발제문은 인권옹호 활동과 지역 공익변호사의 협업의 힘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전문성의 강력한 힘”에서의 전문성은 많은 경우 변호사가 아닌 활동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성은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로 성장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분인 것 같습니다. 잘 키운 1명의 공익변호사가 10명의 변호사 부럽지 않은 순간이 오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궁민 활동가님께서 변호사들과 협업하면서 특히 힘들거나 답답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법률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를 소개해주시면서 활동 중 하나로 두루의 온마을 Law 사업을 언급해주셨는데, 위 사업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보완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공익법단체 두루 소개

저는 공익법단체 두루 소속입니다. 두루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에서 두루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그 시절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인권, 국제인권, 사회적경제 등 인권 영역별로 주로 연대하는 인권단체가 제안하는 법률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날 즈음부터 두루 구성원들은 비전과 미션을 새로 고민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영역별, 개별적 지원보다는 두루가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활동하는 임팩트 지향 단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속했던 장애인권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대응,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 지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연구 및 입법운동,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 소송, 입법운동, 자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대응하는 시

민단체를 자문하면서 또 동시에 시민단체로서 의견 개진,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 탈시설정책위원회 등 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 등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루가 집중하는 사회변화로 “평등한 접근 - 누구도 일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모두의 1층 프로젝트에, “구금과 자유 - 함부로 간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는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안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 개별적 지원을 외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공익법단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의 동료들이 이런 변화를 거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저는 부산으로 활동을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4. 부산으로 가기까지

지역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두루 입사 전부터 꿈꾸던 것으로, 두루에서 2~3년 정도 일하고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좋은 동료들과 활동하면서 그 기간이 7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지만 반드시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법률지원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7년 사이에 결혼을 하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제 마음대로만 지역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들과 상의 끝에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될거니 맘 대로 해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뭘 해도 안될거라”는 언뜻 들으면 저주(?) 같은 조언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되는 것

이 당연한 분위기라면 조금만 잘 되어도 엄청 좋은거네!’

와서 활동해보니 (이제 고작 3년이라 선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식,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주신 조언 같습니다.

5. 부산에서의 활동

앞서 두루는 임팩트 지향 단체로서 몇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역균형 공익법 생태계, 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 모두의1층입니다. 이 활동은 줌으로 회의하고, 메일과 업무툴인 잔디 그리고 전화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택근무와 줌 회의를 경험하여서인지 이러한 원거리 협업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의 활동은 두루의 지향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제 영역이 아니었던, 동료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던 이주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빈곤, 노동, 기후정의, 탈원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거 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인권영역과 이슈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가능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제가 장애인권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자발적으로 장애인법연구회와 탈시설정책위원회 활동을 하였고, 서울변회 활동이나 민변 활동은 소속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부산민변 활동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감사 등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가, 연구자 등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외부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를 지역에서 하기 위해 부산과 두루의 장애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로스쿨생 실무수습과 별개로 부산에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요청하는 공익법무실습과 공익인권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고, 특강, 로스쿨생들과 함께하는 소풍, 세미나 등 접점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를 지원하려고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등이 모여 지원단을 꾸렸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협의회 운영의 어려움을 눈으로 보니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회의 단체 운영 관련해서 문서 작성, 지출, 각종 행사 준비 등 여러 실무를 도움드리고 있고 부산민변이 향후 지원할 소송 진행 관련하여 부산민변과 협의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부산에서 사무실이 없이 주로 단체 사무실로 찾아가서 협업을 하고 있고, 주1회는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으로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단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파랑이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파랑을 통해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한 인권활동가들을 만나려는 시도입니다.

6. 고민

아직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고민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은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 ① 임팩트를 추구할 것인가? 다양한 지원 요청에 부응할 것인가?
- ② 사건 지원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결국 다 하지는 못하는데, 나의 에너지의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 ③ 지원요청을 받는 사건 중에는 법률구조공단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협업 가능성은 없는지?
- ④ 서울대 로스쿨과 다른 재정적 여건과 분위기가 있는 지역의 로스쿨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 ⑤ 공익변호사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하는게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해나가려면 소통과 조율에 상당한 에너지가 들게 되는데, 공익법 분야에서 참여자들의 적극성, 주도성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 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지 않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오랜 시간을 감수하도

록 하는 것이 맞을까?

⑦ 공익변호사 동료들 찾을 것인가? 공익활동을 병행할 변호사 동료들 찾을 것인가?

⑧ 더 오래 더 힘들게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고군분투하는데 내가 개인 후원을 받아도 될까?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발제자들과 다른 토론자들에게도 위 고민 중 일부라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7. 마무리

지역에서 몇 안되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추켜세워진 적이 많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공익변호사로 박수를 받는다면 광주 의 두 변호사님께서 먼저, 남궁미 활동가와 같은 인권활동가님들이 더 많은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단위와 또 지역 공익 소송 실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메모 >